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46,984,718	16,409,542
일반회계	528,257,528	15,847,726
특별회계	18,727,190	561,816
기타특별회계	18,727,190	561,81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770,670	113,120
의료급여특별회계	1,281,141	38,434
자활기금특별회계	1,691,766	50,753
주택사업특별회계	24,302	729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95,393	2,862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415,128	12,454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424,393	12,732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5,933,980	178,019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2,488,900	74,667
장흥군수질개선훈특별회계	2,566,065	76,98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300	99
장흥군건축진흥특별회계	32,152	96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79,007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